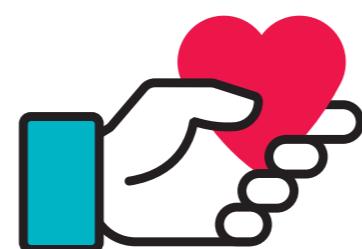




행정안전부

#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



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

## 고향사랑 기부제

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 
고향사랑 기부제  
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.

### 고향사랑기부제는?

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(기초·광역)에 기부하면,  
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.

### 기부자 혜택

-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는 전액, 10만원 초과 금액은 16.5%
- 답례품 : 기부금의 30%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

### 기부처 및 기부한도

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 
기부 가능 /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

### 기부금 사용처

주민복리 증진사업 : 취약계층 지원, 청소년 보호,  
문화·예술·보건 증진,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